구제역 젖소농가, 우유생산 손실도 보상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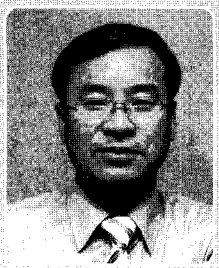

안 창 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사무관

금년 1월 7일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농장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에서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가축을 살처분하였다. 그러나 젖소 사육 일부 농장주는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을 매몰하게 되면 보상금이 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살처분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로 지난 2000년, 2002년 구제역 발생시에는 한우와 돼지에서 주로 발생하여 보상금은 매몰한 경우 한우등은 개체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산지거래 시세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젖소는 산지거래시세가 우유 생산 가치를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젖소농가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구제역은 젖소농가에서 최초발생한 후 계속해서 젖소에서 추가 발생되자 현행 보상기준으로는 농가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한 낙농육우협회가 중심이 되어 우유 생산가치 보상을 대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자 농식품부는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고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정부가 구제역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와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주의 동의 하에 가축을 매몰하고 대신 매몰 가축 및 축산관련 기자재 등에 대해 평가액을 보상하여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에 새로이 가축을 입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매몰가축 등에 보상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메몰한 가축(축산기자재 포함)에 대해서는 시 · 군 · 구 보상금평가반[1]의 평가반원이 축종별 특성, 농협산지시세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결정하여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면 농가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시 · 군(축산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 · 도(축산과)에서 보상금을 최종결정하여 해당농업인의 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1) 평가반 : 반장(시군 축산과장), 시 · 군 방역계장, 축협, 가축위생연구소, 공수의 등 5명 이내로 구성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우유의 생산가치 보상은 해당 시 · 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평가하여 시 · 군(축산과)에 경유하여 해당 농가에 통보하게 되면, 해당농가는 기존 방식과 유대손실 방식중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시 · 군(축산과)에 신청하면, 시 · 도(축산과)에서 확인 후 농가 통장에 입금이 이루어진다.

기존방식은 「시가기준 살처분 보상금 + 생계안정자금(가구당 최대 14백만원) + 가축입식 자금(마리당 230만원/융자)」이 지급되고 있으며, 우유손실 방식은 「시가기준 살처분 보상금+입식제한 기간의 유대 순수익【(유대수입 – 생산비) – 이자발생분】」으로 산정되므로 통상 6개월의 입식 제한 기간중에 젖소를 계속 길렀다면 벌어 들였을 기대 수익이다.

기존 방식 보상(A형)	유대 손실 보상(B형)
시가 기준 살처분보상금 + 생계안정비용 (14,000천원/호) + 가축입식자금(2,300천원/두, 융자)	시가 기준 살처분보상금 + 입식제한기간 유대순수익[2]

*2) 【(최근1년 농가별 산유량 일평균ℓ)×[(최근1년 농가별 수취가격ℓ)–우유생산비 : 585원/ℓ 당, 통계청)]× 180日(6개월】– 이자발생분(보상금 지급일부터 입식제한종료일 까지 지역농협 정기예금이자)

참고로 젖소 70마리를 기르는 농가가 유대보상 방식으로 보상받을 경우 약 3천 780만원으로, 현행 기준의 생계안정 비용 1천 400만원보다 2천 4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나, 가축입식 융자 1억 6,100만원(대출금리 3.0%,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 젖소 70두 사육 농가 유대손실(예시) ▶

- (B형선택시) → 산유량 853ℓ /日×[수취가격(833.8원/ℓ)–우유생산비(585원/ℓ]×180日=38,200천원–(예금이자 400천원) = 37.8백만원(보조성격)
- (A형선택시) → 생계안정비 14백만원(보조성격)+입식비(융자) 161백만원(금리 3%/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가축이동제한으로 실제 폐기되는 우유에 대해서는 집유업체에서 15일 간격으로 해당농업인에게 우유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되며, 고능력 젖소에 대한 우유보상은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시 · 군(축산과)로 부터 최근 1년간 우유가격, 생산량 등의 자료를 통보받아 농가별로 산출하여 시 · 군에 통보하면, 시 · 군에서는 농가의 확인을 받아 시 · 도에서 서류검토 후 농업인의 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농가단위 우유생산 가치보상과 고능력 젖소의 산출방법중 잔여년수를 전부 인정하는 부분은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경영 안정 차원에서 기존소득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취지로 구제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결핵 · 브루세라 등은 농가가 가축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에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우유생산 가치는 전부 인정하지 않고, 고능력 젖소의 잔여년수는 절반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계안정비용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구제역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사육 농가에 지급하게 되며 모든 농가가 해당되나, 젖소농가는 유대손실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축종별 살처분 두수별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액〉

축종 / 호당 지원액	살처분 두수(두)						
	한육우	젖 소	돼 지	사 슴			흑염소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1,400만원	50두이상	30두이상	500두이상	80두이상	40두이상	20두이상	80두이상
1,120만원	40~49	24~29	400~499	64~79	32~39	16~19	64~79
840만원	30~39	18~23	300~399	48~63	24~31	12~15	48~63
560만원	20~29	12~17	200~299	32~47	16~23	8~11	32~47
280만원	5~19	6~11	50~199	10~31	8~15	4~7	10~31
140만원	5두미만	6두미만	50두미만	10두미만	8두미만	4두미만	10두미만

* 다수 축종 해당시는 주축종에 한해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은 사육두수 감안 조정

아울러, 가축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를 지연하거나 소독을 게을리 하는 등 조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에서 최대 60%까지 감액이 되므로 낙농육우 농가에서는 스스로 방역을 하고 가축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

1. 신고기준

가.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 : 감액없음

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 : 20% 감액

다.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 신고 : 40% 감액

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발견한 경우 : 60% 감액

2.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 등 조치이행 기준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 주사 · 투약 또는 주사 · 투약 금지
② 소독 실시(소독실시기록부 확인)
③ 가축의 격리 · 억류 또는 이동제한
④ 살처분 명령

가. ①~④항 모두 이행 시 : 감액 없음
나. ①~④항 3개 이행 시 : 20% 감액
다. ①~④항 2개 이행 시 : 40% 감액
라. ①~④항 1개 이행 또는 전부 불이행 시 : 60% 감액

3. 질병 종류별 기준

○ 브루셀라병은 20% 감액하되, 나머지 질병은 전액 지급

◀ 차등 지급 기준 ▶

•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 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를 적용하되, 최대 60%까지 감액 가능

※ 브루셀라병인 경우 신고기준과 조치이행기준에 따른 감액 후 다시 20%를 추가하여 감액함(최대 80%까지 감액 가능)

끝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우유손실 보상 등은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등 지급요령"이 3.3까지 행정예고 중임을 감안, 최종 확정은 3월 초순경에 확정되므로 실제로 보상금은 3월 중순이후에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가 구제역의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는 보상금 등으로 다시 가축을 입식하여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목장경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보상금평가액 상한선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초임만삭 가격의 80%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초임만삭 가격의 90%	
	초산우(임신만삭)	초임만삭 가격의 85%	
	초산우(임신3~8개월까지)	초산우가격의 90%	
	2산우	초임만삭 가격의 80%	
	2산우(임신만삭)	초임만삭 가격의 70%	
	2산우(임신 3~8개월까지)	초임만삭 가격의 75%	가격산정기준 및 방법은 비고
	다산우(임신만삭)	초임만삭 가격의 60%	5.에 의함
	다산우(임신 3~8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다산우(3~5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상등
육우	노산우(6산이상)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초과	
	고능력우	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의 1/2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고능력우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초과 산유량×농가별유대-생산비)×이용잔여년수	
	유사산 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비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비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거세우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육우 거세우의 평균농가 수취가격 기준(6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육우 임신우	체중kg×육우 비거세우의 체중 kg당 가격) + (젖소 초유떼기 가격) × 살처분 당시 개월수/10개월)	